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57

발의연월일: 2020. 7. 17.

발 의 자:정청래·임오경·오영환

김남국 • 신현영 • 김승남

이병훈 • 박성준 • 서삼석

전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수 없을 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때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원가정보호 원칙"과 부차적인 "유사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가 일어난 가정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가해자인 부모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 rome)의 치유와 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한 원가정보호의 원칙을 일률 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상담·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상담·교육 등에 참여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후단 신설).
- 나.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상담·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고, 이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상담·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 단서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를 "아동 학대행위자"로 한다.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상담·교육 등"이라 한다)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교육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상담·교육 등에 참여하여야 한

다.

부 칙

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 ② (생 략) 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 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 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 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 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 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야 한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아동의 보호 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 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 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 를 고려하여 지원·조치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보호조치) ① ~ ③ (생 제15조(보호조치) ① ~ ③ (현행

략)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 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 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 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⑩ (생 략)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한 상담 • 교육 등의 권고)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 에 대하여 상담 · 교육 및 심리 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 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 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과 같음)
4
아동학대행위자

⑤ ~ ⑩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 한 상담·교육 등) 아동학대행 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이 정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 적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상담·교육 등"이라 한다)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ㆍ교육 등에 참여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한다. <u>상담 · 교육 등에 참여하여야</u> 한다.